

# 구미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 구미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연월일 : 2015. . .

제출자 : 구미시장

##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의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 및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관련 용어 정비

- 「구미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나 . 상위법 변경(안 제1조, 제4조, 제6조)

- 「농어촌소득개발촉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제65조」 ⇒ 「지방재정법 제78조」
- 「지방재정법 제115조」 ⇒ 「지방재정법 제94조」

다. 용자 및 보조관련 조항 삭제(안 제8조, 제9조)

- 실효성 없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용자 및 보조 관련 조항 삭제

## 3.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제78조」, 「지방재정법 제9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붙임)

## 구미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미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구미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촌소득개발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농촌 지역 공업개발 촉진지구(이하 “농공지구” 라 한다)조성계획에 따라 농공지구의 조성사업 ”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구미시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를 “구미시 농공단지 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중 “농공지구조성사업”을 “농공단지 조성사업”로,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지구내의”를 “단지내의”로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을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 배수시설”으로 한다.

제3조 중 “기채자금·보조금·상환금·이자·”를 “기채자금, 보조금, 분양대금, 이자,”로, “융자금·보조금·기반조성비 및 기타부대경비로”를 “기반조성비, 타회계의 전출금, 기채의 상환금과 이자 및 기타 부대경비 등으로”로 한다.

제4조 중 “ 지방재정법 제65조”를 “「지방재정법」 제78조”로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여 변제하여야 한다”를 “변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른다.”

제7조 중 “금융기관에 금고를 설치한다”를 “구미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금고를 설치한다” 로 한다.

제8조(용자 및 보조), 제9조(용자금의 일시상환)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구미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br>설치운영조례                                                                                                                                                                                                                  |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br>설치 및 운영조례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농어촌소<br/>득개발촉진법</u> (이하 "법"이라 한<br>다)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역 공<br>업개발 촉진지구(이하 "농공지<br>구"라 한다)조성계획에 따라 농<br>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br>로 수행하기 위하여 <u>구미시농공<br/>지구사업특별회계</u> (이하 "회계"<br>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br>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br>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br>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br>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조<br>성사업 -----<br>----- 구미시농<br>공단지사업특별회계-----<br>-----<br>-----<br>-----<br>-----<br>-----.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br>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br>-----.                                                                                                                                 |
| 1. <u>농공지구조성사업</u> 이라 함은<br><u>농공지구</u> 를 조성하기 위한 이<br>지구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br>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br>신시설 등을 말한다.                                                                                                                                | 1. <u>농공단지 조성사업</u> -----<br><u>농공단지</u> -----<br>단지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br>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br>통신시설, 배수시설 -- -----.                                         |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  
은 기채자금·보조금·상환금·이  
자·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 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 사  
업에 소요되는 융자금·보조금  
기본조성비 및 기타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회계간 전용)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연도에 한하  
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여 변제하  
여야 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  
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  
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  
금출납공무원에 따른다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  
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에 금고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세출)-----  
은 기채자금, 보조금, 분양대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 -----  
-----  
----- 기본조성비, 타회계의  
전출금, 기체의 상환금과 이자  
및 기타 부대경비 등으로 한다.

제4조(회계간 전용) 「지방재정  
법」 제78조 -----  
-----  
-----  
-----, -----  
----- 변제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  
방재정법」 제94조에 따른다.

제7조(금고의 설치) -----  
----- 구미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금고  
를 설치한다.

제8조(융자 및 보조) ①시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지구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이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등은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제2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

제8조(융자 및 보조) <삭제>

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⑤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의 채권관리  
부를 비치·정리한다.

⑥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  
의 납부고지서는 【별지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부한  
다.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  
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  
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  
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  
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을 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삭제>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  
정한 것 외에 회계의 관리·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  
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관계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5. "재활용산업"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을 말한다.
6.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7.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류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 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7의3. "복합용지"란 제7호의2와 제9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 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 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

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溜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

사. 전기·통신·가스·유류·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0.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란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에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11.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2. "준산업단지"란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제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 지방재정법

**제78조(세계현금의 전용)**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처리를 할 때 세계현금(歲計現金)이 부족한 경우 같은 회계연도에서만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辦濟)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출납원과 그 출납사무를 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은 사람이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변상 책임을 진다.

| 소관 실·과      |       | 투자통상과               |
|-------------|-------|---------------------|
| 입<br>안<br>자 | 과 장   | 김 홍 태               |
|             | 담 당   | 전 명 희               |
|             | 담 당 자 | 박 미 라<br>(480-6033) |